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1024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이민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현주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소27351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원 및 그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8.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0.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4.부터 각 2026. 8.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 마케팅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21. 4. 28.경부터 2022. 8. 7.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블로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별지 1 '원고 게시글' 기재와 같은 각 게시글(이하 순번에 따라 '원고 ○ 게시글'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 C은 네이버 카페 'E'(이하 '피고 네이버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B으로부터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네이버 카페 포스팅 작성을 의뢰받



았고, 그에 따라 별지 2 '피고 게시글' 기재와 같은 각 게시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게시글'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이 작성되었으며, 위 게시글은 피고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었다.

다. 원고 ⑤, ⑦, ⑧, ⑨ 게시글과 이 사건 ⑤, ⑦, ⑧ 게시글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원고 ⑤ 게시글	이 사건 ⑤ 게시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게되니, 원장님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광고는요, 쉽게 이야기 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내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가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요? 둘째는, 광고라고 해서 광고스럽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광고”의 이미지 모습은 이래야 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나봐요. 그래서 매력적인멋진 피드를 잘 올리시다가도,	여러 사례를 살펴보다가 반복적으로 실수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마세요! 광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고라고 광고다워야 할 필요는 없다! 머릿속에 ‘광고는~~~~해야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력적이고 멋진 피드를 아무리 올려도

원고 ⑦ 게시글	이 사건 ⑦ 게시글
니즈를 충족시켜야 해! 원초를 찾아내야해~ 니즈(Needs)는 결핍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니즈는 본연의 결핍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를 이를 욕구라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주 본연의 욕구예요. 내가 당장 배고파 죽을 거 같어. 당장 먹을게 필요해! 이걸 니즈입니다. 원초(Wants)는 구체적인 수단이 투영된 니즈예요. 원초는 구체적인 욕구의 수단과 내 선호를 반영한 욕망입니다. 무엇을 더 중시하며,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소통시 원초를 터치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원초를 찾아야 한다. 니즈(Needs)란? 니즈는 결핍을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 욕구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게 필요하다 느낀다면 이것은 니즈(Needs)입니다. 원초(Wants)란? 원초는 니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욕구의 수단이나 선호를 반영한 욕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상당시 원초를 건드려주어야 합니다. 피아노 학원 마케팅의 대상에 따라



다. 원장님의 교육 대상에 따라, 지갑을 여는 대상이 학부모일수도 혹은 수강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피아노학원 하면 피아노 배우러 갔지 만, 요즘은 과연 아이가 피아노를 잘치게 하기 위 해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걸까요? 다양한 창의성 관련 교육은 뭘깁? 기억하세요. 고객은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 보다,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요	지갑을 여는 학부모가 대상이 될수도 수강생 그 자체일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피아노 학원은 단순히 피아노를 배우러 가는 곳이 었지만 요즘은 피아노 학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 까요? 다양한 창의성 관련 교육은 고객은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을 더욱 쉽게 선택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며
---	---

원고 ⑧, ⑨ 게시글	이 사건 ⑧ 게시글
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나요? 제작을 해야 할까요? 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리도 되지 않고 매월 돈만 나가면 없으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 다. 원장님 포함 선생님이 4인 이하의 작은 학원의 경우 굳이 공력을 들여 홈페이지 장만을 하시 기 보다는, 블로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라면, 홈페이지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온라인 마케팅 측면에서 학원 홈페이지가 있으 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 1. 규모가 있고, 잘 갖춰진 학원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2. 여러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대표 사이트로 노출이 됩니다. 3. 온라인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까요?	학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학원이라면 무조건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할까요?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좋은 점과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필요할수도 아닐수도?!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겠죠? 하지만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 는다면 매월 돈과 시간, 에너지만 나가고 안하느니 만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볼 수 있어요. 보통은 원장님 포함 선생님이 4명 이하라면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시기 보다는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어 느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라면 홈페이지를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왜 필요할까? 온라인 마케팅 측면으로 학원의 홈페이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보이고 잘 갖춰진 느낌 을 줘요 여러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대표 사이트로 노출이 되며 온라인 타겟마케팅도 도전해볼 수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 어디서 제작할까?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머리가 꽤



학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머리가 아플겁니다.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공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주문 제작의료까지 다양합니다. 첫째, 네이버 F 홈페이지입니다. 100% 공짜입니다. 둘째, 홈페이지 G, 즉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제공을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하기 어려우며 학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습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이트들에 탑재된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한 나만의 온라인 학교(학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넷째, 학원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돈내고 제작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아플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F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100% 무료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G인데요, 쉽게 말해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면 확실히 홈페이지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초보자가 하기 어려워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학습 동영상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동영상 강의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학원 홈페이지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나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비싸긴 하지만 확실한 퀄리티가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	---

라. 원고는 2022. 12.경 피고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확인한 후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렸고, 2023. 12. 22.경 피고 C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은 위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각 게시글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각 게시글과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유사성 및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각 게시글은 원고가 학원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노하우를 모아 저작한



어문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저작권, 저작인격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블로그 게시글을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후 피고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는바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 게시글 한건당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250,000원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00,000원 등 합계 1,25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들은 총 8건의 게시글을 작성 및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250,000원 + 1,000,000원) × 8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⑤, ⑦, ⑧, ⑨ 게시글의 창작성 여부

피고들은, 원고 각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마케팅전략이나 개념 설명, 배경 사실 등의 대부분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

1)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조), 원고가 작성한 원고 ⑤ 게시글의 경우 학원 광고에 관하여 학원 원장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의 종류를 분석하여 두 가지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구조(내용이나 순서, 주제 등)를 고려하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⑦, ⑧, ⑨ 게시글의 경우 비록 그 문언 자체만을 두고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각 주제에 관한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표현 구조(순서, 논리 전개 등)²⁾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⑤, ⑦, ⑧, ⑨ 게시글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

2)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2)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⑤ 게시글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원고 ⑤ 게시글의 일부 핵심적인 표현들이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원고 게시글의 표현 구조(내용, 순서, 주제 등)를 차용하여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실질적 유사성³⁾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⑦ 게시글의 경우 원고 ⑦ 게시글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구조(니즈와 윈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설명 시 해당 차이의 중요성, 피아노 학원 및 창의성 사례를 통한 적용에 이르는 순서와 논리 전개 등)를 차용하여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⑧ 게시글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원고 ⑧, ⑨ 게시글의 표현 구조(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 여부, 필요한 이유, 제작 방법으로서 네이버 F, 홈페이지 G, 동영상 제공 기능 등 순서, 세부적인 내용에 따른 각 소주제 및 게시글 전체의 주제)를 차용하여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⁴⁾ 피고 C은 원고와의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원고 각 게시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원고 각 게시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각 게시글을 위와 같이 복제한 이 사건 ⑤, ⑦, ⑧ 게시

3)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문자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전체로 보아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이 사건 감정서에도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등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글을 작성 및 피고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나머지 게시글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게시글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거나, 원고의 게시글과 이 사건 각 게시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⁵⁾).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가) 원고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피고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스스로 블로그 포스팅의 비용을 받고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작성 대가로 피고 B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125조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6조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참작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5) 원고 ④ 게시글의 경우 대부분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 사용되어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 설명회에 관해 서술한 방법 역시 독창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독창성 있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④ 게시글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⁶⁾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산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 등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명하기도 어렵다.

2) 위자료

가)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6)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의 취지 참조



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 경위 및 태양, 침해된 저작물의 성질, 침해행위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900,000원[= 피고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각 게시글 1건당 300,000원 × 3건(이 사건 ⑤, ⑦, ⑧ 게시글)]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900,000원 및 그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⑧ 게시글 게시일인 2022. 6. 28.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⑦ 게시글 게시일인 2022. 6. 30.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⑤ 게시글 게시일인 2022. 7. 14.부터 각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⑤, ⑦, ⑧ 게시글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 게시글과 관련된 피고 C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⁷⁾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는 데 동의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민사소송법 제418조),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 함덕훈

판사 노해준

7) 더욱이 피고 B은 원고가 2022. 12. 13.경 저작권 침해 사실을 주장하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먼저 비공개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별지 1

원고 게시글

순번	게시일	제목(URL)
1	2022. 8. 7.	H (인터넷주소 2 생략)
2	2022. 1. 25.	I (인터넷주소 3 생략)
3	2021. 11. 24.	J (인터넷주소 4 생략)
4	2022. 5. 10.	K (인터넷주소 5 생략)
5	2021. 4. 28.	L (인터넷주소 6 생략)
6	2021. 10. 4.	M (인터넷주소 7 생략)
7	2022. 5. 18.	N (인터넷주소 8 생략)
8	2021. 10. 11.	O (인터넷주소 9 생략)
9	2021. 10. 21.	P (인터넷주소 10 생략)



별지 2

피고 게시글

순번	게시일	제목(URL)
1	2022. 8. 9.	Q (인터넷주소 11 생략)
2	2022. 8. 5.	R (인터넷주소 12 생략)
3	2022. 8. 3.	S (인터넷주소 13 생략)
4	2022. 7. 19.	T (인터넷주소 14 생략)
5	2022. 7. 14.	U (인터넷주소 15 생략)
6	2022. 7. 12.	V (인터넷주소 16 생략)
7	2022. 6. 30.	W (인터넷주소 17 생략)
8	2022. 6. 28.	X (인터넷주소 18 생략)